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1. 2. 8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2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1. 27.
- 다. 상정일자 : 제77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1. 2. 8)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 영 상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1999.9.7 법률 제6024호)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생활보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 관련된 조례들을 동 조례의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 관련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
- 지원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들을 동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동 조례(안) 제1조(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입법체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중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죠?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예.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2. 8. 윤정용 위원 외 1인
-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1조 및 부칙 제3조제1항 중 입법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제2조제1호"는 "제2조제2호"로 함.
 - 부칙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2. 8.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안) 제1조 중 "제2조제1호" 는 "제2조제2호"로 함.
- 부칙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관의 직무내용"으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1조 중 "제2조제1호" 는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의 직무내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등 저소득주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관련,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표 제2호 여성·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급 8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7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직명 사회복지관의 직무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1조(목적)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제2호</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 제2조 (원안과 같음)</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복지 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p> <p>② ~ ⑤ (생략)</p>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1999.9.7 법률 제6024호)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생활보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 관련된 조례들을 동 조례의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 관련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
- 나. 지원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근거법령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2조 등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00.7.27 대통령령 제16924호)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00.8.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임법예고(2000.12.5~2000.12.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 1. 1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급자로 책정한 자
2.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단체로 한다.
- 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 ⑤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⑥제3조제1항제6호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⑦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관련,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표 제2호 여성·청소년 아동 복지분야의 직급 8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7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직명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 ②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③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④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⑤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